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제13조의2 관련)

1. 종이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화장지, 완충재, 상자 등의 종이제품 제조
 - 나. 재생종이 또는 재생판지의 제조
 - 다.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의 제조
 -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2. 유리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폐유리병을 세척하여 재사용
 - 나. 폐유리병을 사용한 토목·건축자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 다. 폐유리병을 사용한 유리분말 등 재생원료 제조
 -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3. 금속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폐금속캔을 압축하거나 파쇄하여 금속원료로 제조
 - 나. 포장재로 재사용
 - 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수출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20퍼센트 이하일 것
 - 가.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다만, 플러프, 플레이크는 세척한 것만 해당한다)
 - 나.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 다. 포장재로 재사용
 - 라.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5.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 가.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
 - 나.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 다. 폐발포합성수지를 사용한 내화제품 또는 섬유코팅제품 제조
 - 라. 발포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로 재사용
 - 마.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6.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라목 및 마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의 합계가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가. 폐플라스틱을 사용한 재생원료 제조[영 제18조제1호카목의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경우에는 탈유(脫油)만 한 것도 해당한다]
나. 페플라스틱을 사용한 성형제품 제조

다. 유류 제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
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페플라스틱을 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 사용한 별표 7 제1호의 기준
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 중 성형제품의 제조[저위발열량은 킬로그램
(kg)당 6천킬로칼로리(kcal) 이상이어야 한다]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합성수지재질 제품·포장재로 재사용

사. 용광로 환원제,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로 가스화원료, 가스(수소
및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를 얻기 위한 시설에서 얻어진 것으
로 한정한다) 제조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7. 전지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시 전지류가 폭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가. 전지의 화학반응을 위하여 사용된 금속물질은 제품 생산 원료 또는 재료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것. 다만, 리튬전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에 따라 회수·재활용한 금속물질을 제외한 잔재물[고철, 합성수지,
전해액, 공정 오니, 분진, 광재(금속을 분리하고 난 찌꺼기를 말한다) 및
리튬전지의 파쇄물 등을 말한다]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
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溶出)시험 결
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
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2)에 따른 관리형 매립시
설에 매립할 것

물질	용출액 기준
납 또는 그 화합물	1리터당 3밀리그램(3mg/ℓ) 이상
수은 또는 그 화합물	1리터당 0.005밀리그램(0.005mg/ℓ) 이상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1리터당 0.3밀리그램(0.3mg/ℓ) 이상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8. 타이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되, 바목의 방

법으로 재활용하는 양이 총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가.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나.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다.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조

라.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바.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하거나 별표 7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

사. 폐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遮水材)로 이용

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9. 윤활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를 제조할 것

10. 형광등: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시 형광등이 파손되어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할 것

가. 형광등에 들어 있는 수은은 금속수은이나 수은화합물 형태로 회수할 것

나. 형광등에서 회수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의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 시험 결과 수은 함유량이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0.005mg/L) 미만일 것

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하여 나목의 기준에 대한 용출시험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 결과서를 통보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

라. 형광등의 유리는 유리분말 등 유리제품 원료를 제조하거나 유리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11.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광다이오드칩, 칩 장착용 보드 및 그 밖의 부분품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

가. 합성수지 및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은 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회수하거나 재생원료로 제조하고, 그 잔재물은 안전하게 처리

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

1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것